

# - 2024년 김제시 해외시장 개척사업 -

## 통상닥터 연계 기반육성 지원사업

1

### 사업개요

#### 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통상닥터 참여기업 수출기반조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5. 4월 ~ 2025. 6월
- 지원대상 : 김제시 통상닥터 지원사업 참여기업(8개사)
  - (주)천○, 주식회사 ○드, (주)에이○특○, 호○이○에○, 진○에○엠○, (주)○신, 금○특○, 유○오○
- 지원내용 : 단계별(A,B,C) 세부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
- 지원범위 : 업체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(자부담 10%)
  - ※ 선착순, 예산 소진시까지(당해 예산에 따라 지원액 변동 가능)

#### 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: 김제시 통상닥터 지원사업 참여업체(8개사)
- 사업기간 : 2025. 4월 ~ 2025. 6월 이내
- 지원내용 : 통상닥터 참여업체 해외마케팅(수출기반구축) 지원
  - (기반구축) 시제품 제작, 해외인증 등 통상닥터가 수출 컨설팅 중 기반구축의 필요한 사항
  - (통상닥터) 수출기반구축이 필요(희망) 업체 발굴 및 추천
- 세부내용
  - 1) A(계약체결전)단계
    - 통상닥터 연계 기반육성지원 : 통상닥터 해외출장, PILOT/포장지 제작비 등
    - 해외 인증 및 등록(특허) 지원 : 해외인증 획득 소요 비용 지원 등
    - 통상닥터 활용 해외 직접 마케팅
      -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여시 통상닥터 활용 용역비(30만원/건), 출장비(항공비/숙박비)
      - ※ 항공비, 숙박비 외 기타 체재비용 등 자부담

## 2) B(계약)단계

- 통상닥터 연계 기반육성지원 : 구매조건부 기업 제품개선 및 제품 R&D지원 등
  - 구매조건부 제품개선 및 시제품개발 : 포장지 및 용기개선(시제품 제작)
- 글로벌 진출 코칭 지원 : 환변동에 따른 원가계산, 수출단가 책정 방법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코칭 지원
- 변호사 검증 지원 : 수출계약서 세부사항 및 규정 검토(법적측면) 등
- 환변동(차익)보험료 지원 : 기업이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헷지할 수 있도록(ex. 환 차손을 입게 될 경우) 이를 보상

## 3) C(수출)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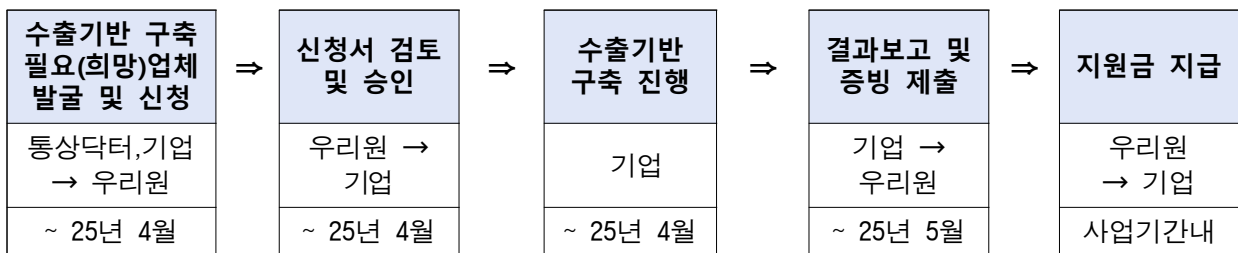
- 통상닥터 연계 기반육성지원 : 구매조건부 기업 제품개선 및 판촉행사 등
  - 구매조건부 온·오프라인 마케팅(ex. 판촉행사, 온라인마케팅 등)
- 선적 서류 및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검토 지원

※ 글로벌 진출 코칭 지원 및 서류 검토 지원 항목은 우리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활용 예정
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접수([kimkh1318@jbba.kr](mailto:kimkh1318@jbba.kr))

- 제출서류 : 통상닥터 연계 수출기반구축 지원 신청서 1부

○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진흥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 2 운영절차

### 1. 지원금 신청·수행·지원 절차

○ 지원사업 수행기간 : 지원항목 승인완료일 ~ 사업기간내

① 수출기반구축 지원 신청 [기업 → 우리원]

- ② 수출기반구축 지원 승인 안내 [우리원 → 기업]
- ③ 지원항목 수행 및 결과보고(청구서 및 증빙포함) 송부 [기업]
- ④ 검토 및 지원금 사후정산 [우리원 → 기업]

### 3

### 집행·지급 기준

#### 1. 지원범위

- 통상닥터가 수출 컨설팅 중 기반구축의 필요한 사항
- 모든 지원항목 중 단순 자산 취득성(인쇄,구매 등)은 지원 불가

구분	단계	지원항목
기반육성 지원	<b>A단계</b> (계약체결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 인증 및 등록(특허) 지원</li> <li>· 통상닥터 활용 해외 직접 마케팅</li> <li>※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여시 통상닥터 활용 용역비(30만원/건), 출장비(항공비/숙박비) 지원</li> </ul>
	<b>B단계</b> (계약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매조건부 제품개선 및 시제품개발</li> <li>· 글로벌 진출 코칭 지원</li> <li>· 변호사 검증 지원</li> <li>· 환변동(차익) 보험료 지원</li> </ul>
	<b>C단계</b> (수출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매조건부 기업 제품개선 및 판촉행사 등</li> <li>· 구매조건부 온·오프라인마케팅</li> <li>· 선적 서류 및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검토 지원</li> </ul>

#### 2. 사업비 집행기준

- 집행기간 : 신청서 승인일 ~ 2025. 6.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선승인된 지원항목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지원금 신청서 승인받은 후 결과자료를 제출하는 사후정산 방식
- 지원금은 최대 2백만원 지원(자부담10%)(예산 소진시까지)

#### 3. 사업비 지급기준

- 지원영역의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련 증빙 제출  
ex1) 전시회 참여 중 상담 내용(일지 등) 제출 必
- 모든 지원항목은 구매조건부로 지원
- 지원금 지급은 선정기업 명의 계좌만 가능
- 사업비 정산 시 결과보고 + 지출증빙 + 결과물 제출 必
- 계좌이체(해외송금 포함) 혹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
**< 지원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>**

항 목	세 부 내 용
공 통 제 출	① 통상다터 연계 수출기반구축 지원 청구서 ② 통상다터 연계 수출기반구축 지원 결과보고 + 증빙자료 (제작품 등) ③ 견적서 + 지출 증빙(송금증+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) → 계좌이체(해외송금 포함) 혹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※ 외화거래 시 결제시점의 환율 증빙 첨부 ④ 구매조건부 확인 가능 서류(MOU, 구매의향서, 계약서 등) ※ 해당 제출서류 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를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.
개발/제작	① 바이어 요청 증빙 必(상담일지, 이메일 캡처본 등) ② 시제품 제작의 경우 별도 추가 결과보고서 제출(붙임3-1)
샘플 배송료	① 바이어의 요청 증빙 必(상담일지, 이메일 캡처본 등) ② 패키징리스트(P/L) ③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운송장(AWB) ④ ‘수출이행’ 수출신고필증 제출 - 거래구분(92)/결제방법(GN)/모델·규격 ‘free of chare’ 표시必
인증	① 취득한 특허/지재권/인증서 사본 제출 必 ※ 인증의 경우 해외규격인증 리스트 붙임파일 내 인증에 限, 리스트에 없는 인증의 경우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
해외 판촉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차료 및 매대설치비</li> <li>① 행사 정면 사진 제출 必</li> <li>· 홍보물 제작(배너광고, 엑스매너 등)</li> <li>① 행사 정면 사진 제출 必</li> <li>② 제작 및 결과물 사진 제출 必</li> <li>· 판촉요원 활용</li> <li>① 행사 정면 사진 및 판촉활동 사진 제출 必</li> <li>② 신분증 사본 제출 必</li> <li>③ 수령영수증 제출 必</li> </ul>
해외마케팅 (통상다터 활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박람회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회 배치도 및 개별부스 정면 사진(부스코드 포함) 제출 必</li> <li>- 전시회 디렉토리 (해당업체 소개 페이지 등) 제출 必</li> <li>- 전시회 상담일지 제출 必</li> </ul> </li> <li>· 수출상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출상담회 상담일지 제출 必</li> <li>- 바이어 명함 및 상담사진(사무실, 전시회장, 공장 등 단,식당X) 제출 必</li> <li>※ 바이어와 출장자 얼굴이 보이는 사진이어야 함.</li> </ul> </li> <li>· 항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석 왕복 항공료 기준</li> <li>- INVOICE(이용시)+E티켓+보딩패스(출입국증명서대체가능) 제출 必</li> </ul> </li> <li>·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탠다드룸 기준</li> <li>- INVOICE(이용시)+E티켓+보딩패스(출입국증명서대체가능) 제출 必</li> </ul> </li> <li>※ 기업 담당자의 현지 출장비 지원 불가</li> </ul>

**< 지원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>**

항 목	세 부 내 용
환변동(차익) 보험료 지원	① 환변동보험증서 제출 必 ② 환변동보험료 납부통지서 제출 必 ③ 환변동보험료 납부영수증 제출 必 ④ 결제통지내역증빙(필요시)
컨설팅	① 컨설팅 계약서 제출 必 ②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必 ③ 국가자격증(변호사, 법무사 자격증 등) 제출 必 ※ 필요시 컨설팅 수행업체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

**3 문의처**

○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 063-711-2185

**4 붙임**

붙임1. 통상닥터 연계 수출기반구축 지원 운영지침 1부